

학생준칙규정

제정 : 1995.03.01
개정 : 1999.01.05
개정 : 2007.09.01
개정 : 2014.07.01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0.12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장 목 적

제1조(목적)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건전한 학생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가 지켜야 할 제규범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하며 학생은 따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「학칙」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2장 학생 신상카드 및 학생증

제3조(학생신상카드) ① 입학이 허가되어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학생들은 소정의 기일 내에 학생신상카드(이하 “신상카드”라 한다)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신상카드에 기재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생증) ① 입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학생은 교내·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며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③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·시험을 금지하며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의 출입을 금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- ④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, 학적 변동시(제적, 자퇴, 휴학 등) 학교에 반납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⑤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 학교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증 재발급 시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장 집회, 게시, 간행물 배포

제5조(집회승인) ① 교내·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5일 전에 행사(집회) 계획 보고서를 입학학생취업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, 2023.10.16.>

- ②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5일 전에 입학학생취업팀을 경유하여 사무처에 사용신청을 하며 총장의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제6조(학생 간행물) ① 본 조는 전교 단위 및 학과 단위, 동아리 단위, 기타 간행물을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된다. <개정 2021.12.01.>

- ② 전교 단위 간행물은 “학생 생활지도 위원회” 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학과 및 동아리 단위 간행물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의견서를 입학학생취업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0.16.>
- ④ 간행물 발간절차는 신청(구비서류 작성)서를 입학학생취업팀에 제출하고 입학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의 발간 허가서를 교부받아 발간한다. 배포할 경우 배포 신청을 입학학생취업팀에 제출한 후 입학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배포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제7조(각종 홍보물) ① 본 조의 “홍보물” 이라 함은 학술, 예술, 체육행사, 친목행사(동문회,향우회)의 홍보물 및 학과, 동아리,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 및 각종 광고, 공고, 현수막과 기타 게시물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- ② 모든 홍보물 부착 시 게시물 허가원을 입학학생취업팀에 제출하고 검인을 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0.16.>
- ③ 외부단체의 홍보물은 반드시 입학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3.10.16.>
- ④ 행사에 관련된 홍보물은 행사종료 다음 날까지 철거를 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지체없이 회수 또는 철거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⑤ 학생이 허가를 득하여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철거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상벌규정에 의해 처벌한다.

제4장 학생 단체 활동

제8조(학생단체 정의) “학생단체” 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.)란 본 대학교 학생회 및 동아리 부설 산하에 있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및 이에 준하는 모임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9조(학생회 활동관련) ① 학생회 및 학생회 산하단체는 학년 초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거 그 부서 구성 내용을 입학학생취업팀을 거쳐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② 학생회 활동에 따르는 경비지출은 그 예산서 및 결산서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학학생취업팀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③ 학생회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④ 학생회 경비집행은 입학학생취업팀을 통하여 총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⑤ 학교 측 요구가 있을시 학생회장은 즉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
⑥ 학생회 간부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
2.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학기 학업성적이 3.0 이상인 자
3.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⑦ 집행위원회의 각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 동의를 거친 후 입학학생취업팀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 12. 01., 2023.10.16.>

⑧ 대의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대의원회 의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 동의를 거쳐 입학학생취업팀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제10조(단체 활동관련) 모든 학생 단체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선 「학생단체활동 및 교내 차량운행 안전관리 규정」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>

제11조(학생 교외 활동에 관한 사항) ① 학생은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불허한다

② 학생이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입학학생취업팀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③ 범 국가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시험기간 중 대외행사에 참가 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2조(단체 봉사활동) ① 단체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실시일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

구비서류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입학학생취업팀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1. 단체 봉사활동 계획서
2. 예산서
3. 참가자 명단

②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자명단, 봉사활동결과 보고서, 예산결산서 및 자체 평가서를 입학학생취업팀에 제출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제13조(단체 재정 및 활동) ① 단체 운영 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의 재정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학학생취업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<삭제 2020.03.01.>

③ 교내·외를 막론하고 집회 및 행사가 수업과 중복될 시에는 행사를 할 수 없다. 다만,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한 허가원을 입학학생취업팀에 제출하여 입학학생취업처장의 허가를 득하여 제한적으로 집회 및 행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제14조(단체 임원 선출과 임기) ① 단체 임원은 소속 단체의 규정 및 회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.

②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입학학생취업팀에 제출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③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보궐 선거하여 그 결과를 입학학생취업팀에 제출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제15조(단체 지도교수) ①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받은 조교수 이상 본 대학교 교원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단체 1개당 지도교수 1인을 둔다.

③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2.01.>

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구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 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에게 추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6조(단체의 비품관리) ① 각 학생단체는 비품대장을 비치해야 하며, 비품관리에 대해서는 학생 단체장과 지도교수가 책임을 진다

② 각 학생단체의 비품은 학교 업무상 필요시에는 대여해 주어야 하며, 학생단체의 비품이 단체 활동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비품을 회수 또는

압수한 후 단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>

제17조(학생자치활동 및 공휴일 학교 시설물 이용) ① <삭제 2020.03.01.>

② 학교 내·외에서 학생자치로 회합 및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「학생단체활동 및 교내 차량운행 안전관리 규정」 제5조제3항 의거하여 실시해야 한다. 휴일(공휴일 포함)에 학교에서 활동할 경우 추가적으로 일직 담당 교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5장 학생단체 등록

제18조(단체 등록 요건) ① 본 대학교의 좋은 전통 확립에 부합되고 학술적 연구 및 교육적 공헌성이 있으며, 10명 이상의 정규회원을 확보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>

② 단체 설립 목적 및 활동 범위가 학생 상호간에 친목 도모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, 타 단체와 중복성이 없는 고유한 단체 특성을 지녀야 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.

제19조(단체 등록 절차) ① 단체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단체등록 구비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 및 확인을 거쳐 입학학생취업팀에 제출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1. 단체 등록 신청서(소정양식)
2. 지도 교수(전임강사 이상 교원) 취임 승낙서(소정양식)
3. 회칙
4. 서약서(소정양식)
5. 발기인 명단 및 발기인 총회 회의록

② 단체는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단체 재등록 신청서(소정양식)
2. 회칙
3. 임원명단 및 회원명단
4. 전학기 활동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(소정양식)
5. 신학기 활동 계획서(소정양식)
6. 지도교수 의견서

제20조(단체 자격 취득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학생 생활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입학학생취업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단체로 인정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제21조(단체 자격 상실) 등록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위반될 시 학생생활지도 위원회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 등록을 취소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대학교 설립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
2. 단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<개정 2021.12.01.>
3. 단체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와 1년간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
4. 제16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 <개정 2021.12.01.>
5.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
제6장 학생 생활

제22조(교내·외 생활) ① 교내에서는 항상 정숙·청결하여야 하며 학업에 성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- ② 학교 시설물 및 실험 실습 기자재는 소중히 다루고 항상 정리정돈에 힘써야 한다.
- ③ 학교 내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운동기구 및 술 등을 강의실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④ 교외에서는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언동 및 행동을 삼가하며 인격도야에 힘써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⑤ 교내·외에서 교직원에게 예의를 지키며 상·하급생 간에는 예절생활을 실천해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7장 학생회 간부 선거규정

제23조(선거권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학생회 정·부회장 :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
2. 대의원회 의장·부의장 : 대의원으로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
3. 대의원 : 해당 학과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(각 학과별 학년별 과대표 1명) <개정 2014.07.01.>

제24조(피선거권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능력이 있는 자
2.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3.0 이상인 자

3. 학칙 및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<개정 2021.12.01.>

제25조(선거방법) ① 다음 각 호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학생회 정·부회장 : 전 재학생이 선출 <개정 2021.12.01.>
2. 대의원 : 해당학과 학년별로 그 학과 해당학년 재학생이 선출 <개정 2021.12.01.>

② 대의원회 의장·부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
제26조(임기) ① 학생회 임원 및 대의원회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. 대의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27조(선거시기 및 비용) ① 선거시기는 매학년도 11월에 실시한다. 다만, 11월 중에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선거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학생자치회비에서 지출한다.

제28조(선거관리위원회) ① 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회의 대의원 약간 명으로 하며, 대의원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선거일자 결정 공고
2.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
3.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
4.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
5. 당선자 선포 및 공고
6.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

제29조(학생회 정·부회장 선거) ① 정·부 학생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입후보자 등록 원서 1부
2. 선거권자 재학생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서 1부. 다만, 추천자는 1인 이상 추천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2.01.>

3. 서약서 1부

4. 학과장 추천서 1부

5. 성적증명서 1부

6. 투개표 참관인 추천서 1부

②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 7일 이전에 공고한다. 선거일 투표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③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선거운동의 시작 :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2. 선거운동 비용 : 학생 자치회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 시 사용한 비용내역을 입학학생취업팀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3. 기타 선거운동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④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⑤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정양식(투표용지)에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. <개정 2021.12.01.>

⑥ 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 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. 학생증을 분실한 자는 학생증을 재발급 받거나 입학학생취업팀에서 발행한 재학생 확인서를 받아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16.>

⑦ 선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후보자 중 최고 득표자

2.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: 학업성적, 출석일수 및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.

3.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: 총선거권 자의 20% 이상 투표와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여야 당선된다.

⑧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결정을 하고 학칙 및 제반규정에 의거 징계 처리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

2.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에 대하여 폭행, 협박,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

3. 입후보 등록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

4. 인신공격 및 비판행위

5. 금품수수 및 음식물 접대

6.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,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학풍을 문란케 한 행위

⑨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투표장에는 선거권자와 입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얻은 자만이 출입을 할 수 있고 개표장에는 선거관리위원 및 각 후보자 참관인 이외는 출입을 금하며 개표장에서는 항상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. 이를 위반한 자는 학칙 및 제반규정에 의해 징계 처리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30조(대의원회 의장·부의장 선거) ①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의원총회 개최 7일 이전에 공고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대의원회 의장·부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입후보자 등록 원서 1부

2. 선거권자 8인 이상의 추천서 1부. 다만, 추천자는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2.01.>

3. 서약서 1부

4. 학과장 추천서 1부

5. 성적증명서 1부

③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선거운동의 시작 :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2.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발표 : 의장·부의장 선거를 위해 개최한 대의원 총회에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④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⑤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 후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아 공고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자 <개정 2021.12.01.>

2.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3.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전과 동일할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선정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8장 보 칙

제32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 생활지도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.

제33조(학생회 정·부회장 직무대행) 학생회 정·부회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부재 시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직무대행자를 결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정·부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.
2. 부득이하게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.
3.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기간 업무를 맡을 수 없는 경우. <신설 2020.12.01.>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제27조항)학생회 정·부회장의 '96학년도 선거일은 3월 중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